생활쓰레기 감량대책

종량제 시행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30% 감소되는 등 연간 4,5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으나 현재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60-70%를 차지하는 종이·플라스틱 등 포장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획기적 감량대책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지난 8월 20일 피서지, 고속도로 등에서의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 및 생활쓰레기 감량대책을 발표하였다. 본지는 발표내용중 생활쓰레기 감량대책에 대해 소개한다.

<편집부>

1.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1)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확충 및 수거체계 개선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퇴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1년까지 232개 시·군·구에 자원화시설를 설치(광역시급 이상 지역에 우선 설치, '97년 71개소(863톤/일) --> 2001년 232개소(3,525톤/일))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봉투 및 용기보급의 확대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선 '99년부터 광역시급 이상의 지역에 시행하고, 2001년부터는 시급 전지역에서 실시할 방침이다.

2)음식물 쓰레기 원천 감량대책 추진

가급적 결혼식에서의 지나친 음식제공을 지양하고 간소한 답례품 제공을 유도하는 한편 음식주문을 전제로 한 결혼식장 대여금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현재 가락시장 등 3개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유발 부담금제를 타지역에 확대 실시하고, 이에 '97년말까지 도매시장 26개소 및 공판장 37개소에 실시할 계획이다.

3)음식물 퇴비·사료의 수요자 발굴 및 공동 수거·공급확대

시·군·구별로 축산농가, 유기농가 등과 연계하여 음식물 퇴비·사료를 공동 수거 내지 직접 공급하는 등의 체계를 확립하며, 진들 농산의 경우 수도권지역의 104개 업소에서 1일 53톤 수거, 김포·강화·철원 지역의 축산농가 연합체에 사료로 공급(습식사료제조기 무상설치 및 관리자 1인 파견)할 방침이다.

4)세제·금융지원 강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생산·제조업체에 대한 재활용자금을 우선 지원함과 아울러 좋은 식단제 실천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우선 지정하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로써 수도료 감면(30%), 시설 개·보수 자금융자, 소득세 공제 등이 이에 실행계획으로 있다.

2. 포장 폐기물 감량화

1)리필(Refill)제품의 공급·이용 활성화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화장품·샴푸·린스 등 리필제품의 생산목표율을 단계적으로 5% --> 10% 이상 상향조정하고 대상품목도 확대('97년 하반기 관계규정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백화점 등에서의 리필제품 전용코너 설치를 확대하여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및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리필제품의 사용을 점차 증가시킬 계획이다.

2)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패트(PET)병의 사용제한 및 유리병제품의 표준화 추진
유색 패트병에 대한 폐기물예치금 요율을 인상하여 무색 패트병과 차등화시키고, 유리병의 재사용이 용이하도록 단계별 표준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포장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촉진을 위한 생산자 책무 강화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산자 공동의 책무를 강화하는 "통합재활용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현재 용역 추진중에 있다.

4)민간소비자단체 및 환경단체와 연계하여 장바구니 사용을 적극 추진('97년중에 2만개 보급)
일정규모 이상의 백화점, 유통업체에 대하여는 1회용 쇼핑백의 무상제공을 제한하고, 장바구니 사용 권장할 방침이다.

5)포장재질·과대포장에 대한 단속 강화
'97년 7월 현재 유통중인 주류, 화장품 등 101개 제품조사 결과 26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이에따라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명단을 공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 1회용품 감축대책 추진

1회용품과 관련, 폐기물 부담금의 요율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1회용품 사용을 간접적으로 억제키위해 2001년까지 설치비 비용의 65% 수준으로 제고하고, 1회용 도시락의 사용억제를 위해 주요 행사지에서 공공기관부터 총리훈령에 반영하여 솔선수범하고, 1회용 도시락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도시락의 이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한편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식품접객 업소의 1회용 컵, 1회용 접시 등 5개 분야 12개 품목에 한정된 규제대상품목을 패스트푸드점에서의 스티로폴 용기, PVC 포장재 등을 규제품목에 추가하기위한 검토가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백화점, 목욕탕, 숙박업소, 식당 등 1회용품의 사용규제 대상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연 1회 --> 연 4회)할 방침이다.

4. 재활용품 사용 확대

정부 등 공공기관의 발주공사에 재생골재 사용 등 재활용 제품의 의무사용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종이류를 중심으로 13개 품목을 사용 의무화하고 있다.
민간기업에서도 복사지, 재생종이, 재생골재 등 재활용 제품의 사용을 적극 권장(환경친화기업 지정시 재활용품 사용실적평가 반영 등)하고, 이와함께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폐가전제품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매립을 제한할 계획이다.

5. 쓰레기 종량제 보완 발전

쓰레기종량제의 보완발전을 위해서 종량제 봉투의 재질개선 및 썩는 비닐의 조기 개발하여 전분함유 봉투의 사용확대 등을 추진하고, 백화점, 상가,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생활쓰레기와 성상이 유사한 사업장까지 종량제 확대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단독주택지역의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학교운동장, 동사무소 등의 공터 활용 및 요일별 수거품목의 지정제도를 확대실시하는 한편 주유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비치 확대('96년 5,792개 --> '97년 8,500개)할 계획이다.

6. 정부부처 협조사항

협조사항			추진일정	소관부처
음식물쓰레기감량화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봉투 및 용기 보급 확대		1997~2001	내무부(지자체)
	퇴비, 사료 생산자와 수요자간의 수급체계 확립		연중	내무부(지자체)
	결혼식에서의 지나친 음식제공 억제		1997.9부터	보건복지부
	농산물도매시장 유발 부담금제 확대 실시		1997.12부터	농림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확충		1997~2001	환경부 내무부(지자체)
포장폐기물 감량화	과대포장 지도단속 강화		연중	환경부(지자체)
	리필제품 새안목표율 상향 조정 및 대상 품목 확대		1997.10	환경부
	패트병 사용제한 및 유리병 표준화		1997.10	환경부
1회용품감축	사용제한 강화		분기1회	환경부 내무부(지자체)
	장바구니 보급확대		1997.10	환경부
공공기관 재활용품 사용확대	공공기관 재활용품 의무 사용확대		1997.9	환경부
	민간기업의 재활용 제품 사용권장		1997.9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보완 발전	종량제 봉투 재질 개선	전분함유봉투 사용 확대	1997.9	환경부
		썩는 비닐 조기개발 보급	2002.12	환경부
	백화점, 상가 등 종량제 확대		1997.12	환경부(지자체)
	단독주택지역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	지자체 조례 개정	1997.12	환경부(지자체)
		주유소 재활용품수거함 설치확대	1997.11	환경부 통산부

주요국가별 인증제도

o 주요국가별 인증제도
- ASTA(영국) : 전기안전에 관한 영국정부의 승인제도
- ATL(영국) : 전력공급단체의 전기기기의 인정
- BABT(영국) : 전기통신법에 의한 정보통신규격
- BESEC(영국) : 영국규격협회의 전선 등에 관한 규격
- BEAB(영국) : 전자기술인증협회의 가전제품 규격
- BSI(영국) : 영국규격협회 산업표준규격
- CBJW(폴란드) : 전기제품에 대한 폴란드 국가승인 제도
- CCASGM(중국) : 안전유리 검사규격
- CCEE(장성마크, 중국) : 전기제품 안전규격인증
- CCIB(중국) : 수입상품 안전품질 허가제도
- CEB(벨기에) : 전기제품에 대한 벨기에 국가승인제도
- CSA(캐나다) : 캐나다규격협회의 산업표준규격
- DEMKO(덴마아크) : 전기제품에 관한 국가승인제도
- DKC(불가리아) : 전기기기에 대한 표준규격
- ELOT(그리이스) : 소형가전제품에 대한 산업표준규격
- ETL(미국) : 전기제품에 대한 시험연구기관 규격
- EZU(체코) : 전기제품에 대한 전기시험소 인증제도
- FCC(미국) : 미연방통신위원회 인증제도
- FTZ(독일) : 무선주파수기기에 대한 국가검사제도
- G마크(일본) : 통산성 산하 산업디자인진흥회의 선정제도
- GOST(러시아) : 러시아연방국가 산업표준규격
- IMQ(이태리) : 기계, 전기에 관한 국가승인제도
- JIS(일본) : 일본 산업표준규격
- KEMA(네덜란드) : 전기, 전자기기 국가승인제도
- LCIE(프랑스) : 표준교정, 측정부문 국가인정제도
- MEEI(헝가리) : 전기제품에 대한 협회인증제도
- NEMKO(오스트리아) : 가정용 전기기기에 대한 안전검사제도
- NQCCCP(Q마크, 중국) : 건자재 품질인증
- OVE(스위스) : 전기기술법에 의한 인정제도
- QCCECC(중국) : 전자부품 품질인증
- S마크(일본) : 소비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규격
- SEMKO(스웨덴) : 전기제품에 대한 국가검사규격
- SET(핀란드) : 전기이용에 따른 안전규격
- SEV(스위스) : 전기제품에 대한 민간기관 규격
- SG마크(일본) : 생활용품에 대한 제품안전협회 규격
- ST마크(일본) : 완구규격에 대한 안전
- STAS(루마니아) : 생산, 공정에 관한 국가규격
- TE마크(일본) : 일본의 전기용품 형식승인
- TUV마크(독일) : 기계기구에 관한 검사협회 규격
- UL(미국) : 소비자제품안전법에 관한 민간기관 검사규격
- UTE(프랑스) : 전기기기에 대한 비강제적 인정제도
- VDE(독일) : 소비자용품에 관한 민간검사규격
- WOOL(호주) : 양모에 관한 민간기구규격
- 기타(중국) : CCFPP 소방안전 등 4건

o 국제인증제도
- CE마크(관장기구 : 유럽공동체) : EC 집행위원회에서 EN(유럽규격)에 의한 인정제도
- IECEE(관장기구 : 국제전기기술위원회) :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CEE(구주전기안전협회) 합병으로 만들어진 전기제품에 대한 국제인증제도
- IECQ(관장기구 : 임시인증관리위원회) : 미국, 일본 중심으로 EEC에 대응하여 만든 전기제품 국제인증제도
- ISO 9000(관장기구 : 인증기관(상호인정제도)) : 품질보증체제 대한 인증제도
- NORDIC 협정(관장기구 : 노르딕공동시스템 협정에 따른 검사기관) :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사이에 제품검사 규격
- CENELEC(관장기구 : 구주전기표준화위원회) : 전기기기의 안전사항(EN규격)에 관한 인증제도

o 해외인증 획득업체 수록현황(1,467업체)
- UL(720업체) : 소비자제품안전법에 관한 민간기관 검사규격(미국)
- CSA(411업체) : 캐나다규격협회의 산업표준규격(캐나다)
- VDE(145업체) : 소비자용품에 관한 민간검사규격(독일)
- JIS(61업체) : 일본산업표준규격(일본)
- GOST(8업체) : 러시아 연방국가 산업표준규격(러시아)
- TE(33업체) : 일본의 전기용품 형식승인(일본)
- ETL(5업체) : 전기제품에 대한 시험연구기관 규격(미국)
- SEMKO(61업체) : 전기제품에 대한 국가검사규격(스웨덴)
- 기타(23업체) : GS, ASME, DNV, ZL, GE 등